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21.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공 공 보 건 의 료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65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등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을 해당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6. 28.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대통령령 제 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 전단"으로, "수립하는데"를 "수립하는데"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4조제4항"을 "법 제4조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교육부차관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4. 법무부차관
- 5. 국방부차관
- 6. 행정안전부차관
- 7. 고용노동부차관

- 8. 국가보훈처차장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의5(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 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 4.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④ 시·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법</u>	수립) ① <u>법</u>
<u>제4조제3항</u> 에 따라 관계 중앙행	제4조제4항 전단
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하는데</u> 필요한 지	<u>수립하는 데</u>
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	
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	
지사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u>통보해야</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① (생 략)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	② 법 제4조제5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	
진 실적을 <u>제출하여야</u> 한다.	<u>제출해야</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 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교육부차관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4. 법무부차관
- 5. 국방부차관
- 6. 행정안전부차관
- 7. 고용노동부차관
- 8. 국가보훈처차장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있다.
-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 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養)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

<신 설>

<신 설>

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 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 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 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신 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5(시·도 공공보건의료위 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 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공공 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 ② 시·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 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 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주 민대표
- 3.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 4. 해당 시 · 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 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④ 시·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 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준수사항)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수사항) 법 제17조제3항----

제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제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

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	
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33